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매 압류재산 매수 제한 사유 추가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6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매 압류재산 매수 제한 사유 추가	3
2. 매각결정 관련 제도 개선	6
3.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11
4.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11. 7.
3. 회부연월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매 압류재산 매수 제한 사유 추가

개정안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① 채납자, ② 세무공무원 및 ③ 공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채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신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 제2항제9호1)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2)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같은 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³⁾),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같은 법에 따른 면허⁴⁾) 등 특정 압류재산은 인·허가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매수할 수 있으나, 공매시 그 매수의 제한은 현행법이 아닌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⁵⁾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매수 제한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1)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9. 매각결정 기일

2) 「의안번호 2205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3)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92-3[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

「지방세징수법」 제9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함에도 그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해당 압류재산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의 근거 법률(「농지법」, 「수산업법」 등)에 따라 공매시 매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이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것은 ① 공매와 관련된 업무관계자·이해관계자 등의 이해를 쉽게 하고, 해석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국세징수법」은 2023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징수법」	개 정 안
제80조(매수인의 제한)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2. 매각결정 관련 제도 개선

개정안은 ① 공매재산이 낙찰된 후 “매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사유에 낙찰자가 “매수가 제한된 자”인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92조제1항 제2호), ② 공매재산 매수인이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을 1회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6)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 ----- ----- -----.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낙찰자가 제87조7)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2. ----- 제77조8)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 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8)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① 매각결정 미이행 사유 추가

현행법은 공매재산이 낙찰된 후 바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가 매입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매각결정” 절차를 거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에 “낙찰자가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사유에 “공매재산의 매수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매재산의 매수가 제한된 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매수제한의 개념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입법불비를 시정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도 2020년 12월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유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징수법」	개 정 안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u>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⁹⁾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u>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 ¹⁰⁾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u>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u>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개 정 안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각결정 연기 근거 신설

현행법상 “매각결정”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¹¹⁾에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낙찰자가 공매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상 농지, 「수산업법」상 어업권 등 취득을 위하여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가 해당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¹²⁾

9) 「국세징수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이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채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10)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로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도 2023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징수법」	개 정 안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12) 농지취득자격의 경우 「농지법」상 최대 14일까지 소요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체납처분 중지의 사전 절차 중 “1개월간 공고”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¹³⁾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 ----- ----- 거쳐야 한다.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104조제1항·제2항은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하면서, 그 사전 절차로서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② 1개월간 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② 1개월간 공고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체납처분 중단은 처분 실익이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현행법상 압류 해제시에는 당초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등에게 해제 통지를 하는 절차도 있는 상황¹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고까지 실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1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4) 「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도 2020년 12월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세징수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징수법」	개 정 안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금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u>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u>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4.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개정안은 「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따라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려는 것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생략)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조제1항15)제2호·제3호</u> 에 따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 ----- ----- ----- <u>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u> 에 따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 ----- ----- ----- <u>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3

15)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그림 생략)